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구조조정 방안

金龍夏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국민연금 구조조정의 필요성

가. 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국민연금

노령화, 핵가족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이 점차 증가해 가고 있다. 공적연금제도가 국민노후생활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장래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여 정교하게 설계·조정해 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전국민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와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95년부터 도입된 농어민연금제도의 정착과정을 살펴 볼 때, 농어민 등 자영자가 실제보다 낮은 소득으로 신고함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하게 갖고 있는 현행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 이와 함께, 현행 국민연금 도입당시의 노인계층은 국민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 노인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한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전업주부, 소득이 분리되지 않는 자영자의 배우자 등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편적인 연금제도로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보편적인 연금제도의 확보는 남북 통합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받아왔던 북한 노령계층의 부양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국민연금제도가 일부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대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둘째, 국민연금제도가 현행의 급여수준과 보험료율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경우 2020년대에 국민연금의 당해연도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30년대에는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근본원인은 가입자가 수급하는 것이 부담하는 것 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는 「고급여·저부담」의 수급부담구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현세대의 막대한 연금급여 부담을 후세대에게

전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부문 운용수익률(11.6%)이 금융부문 투자수익률(13.1%)보다 낮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은 재정적자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나.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국민연금

현재 발전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를 둘러싼 경제·사회적 환경은 선진국의 연금제도 발전과정에서의 경제·사회적 환경과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요구에 적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로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은 2차 세계대전후 최고의 경제적 황금기에 연금제도의 확대·발전이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함께 저성장시대의 진입기에 연금확대·발전과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성장시대에 연금확대기를 맞은 선진국은 급증하는 연금급여지출의 부담을 경제내로 흡수할 수 있었으나, 정부재정지출에서 각종 지출요인들이 억제되는 저성장시대의 진입기에 연금확대기를 맞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금급여지출의 증가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현행의 고급여 저부담의 연금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급여 저부담의 연금구조 개편이 선진국보다 좀더 빨리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인구·노동측면에서는 선진국이 50

~100여 년에 걸쳐 인구의 노령화(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 7→14%)가 진행된 반면, 우리나라는 훨씬 짧은 25년 만에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체인구에서 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회의 노령자 부양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보편적인 소득보장체제를 갖추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하여 연금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즉, 통일을 대비하여 국민연금제도가 보다 탄력적인 제도가 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현행과 같은 배타적인 구조 이외에도 개방적인 색채를 함께 가질 때 가능하며, 부과방식적 요소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2.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21세기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은 크게 실질적인 전국민 연금화와 세대간·세대내 형평성 제고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 실질적인 전국민 연금화

국민연금제도가 모든 국민의 노후생활설계의 중추적인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재 국민연금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을 포용하여 실질적인 전국민 연금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총인구 중 국민연금가입자 비율은 23%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자를 합한다 하더라도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 연금체계가 유지된다면 60세 이상 인구중 연금수급자 비율도 2000년에는 5.3%, 2010년에는 26.7%, 2020년에는 43.2%, 2030년에도 49.2%에 불과하다. 즉, 연금제도가 성숙되는 2030년에도 50% 정도만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가 모든 국민의 노후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각출제 연금제도의 골격은 유지한다 하더라도 세대간 상호연대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남한내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연금제도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 하에서는 북한주민을 국민연금제도내에 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내에 남북통일시에 발생할 사회보장부담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사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남북한 주민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체계는 현재의 소득단위당 1연금체계에서 1인1연금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각출제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과방식적인 성격이 가미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제도 도입당시에

국민연금제도는 현재의
소득단위당 1연금체계에서
1인1연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현 노령계층에 대한 무각출노령연금의 지급이 검토되어야 하며, 현재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전업주부 및 협업주부를 국민연금에 가입 시킴으로써 여성의 연금권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의 이동시에도 연금수급권이 확보될 수 있는 공적연금제도간 통산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나. 세대간·세대내 형평성 제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정점을 이루는 시기에도 연금제도가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급여·적정부담 구조」로 개편하여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와 함께 세대간·세대내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은 고급여 저부담의 불균형 체계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재정추진면에서는 수지적자와 함께 기금고갈이 예상되고 현세대의 고급여를 위한 비용부담이 미래세대에게 이전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미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므로 미래세대로 갈수록 부담비용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세대는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이외에도 타 사회보험료 및 조세 증가 부담도 동시에

지게 될 것이므로 이들 세대의 부담능력도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균형 체제로서 이미 9년을 운영하여 온 국민연금제도는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현가에 훨씬 못 미치는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족한 책임준비금은 곧 국민연금의 채무를 의미한다. 이러한 불균형에 따른 채무누적이 일정수준에 이르게 되면 선진국과 같이 연금수급연령, 연금급여율, 연금보험료율 등의 연금구성 요소의 변화를 통하여 채무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조치가 시도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진국의 제도개혁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의 채무증가를 억제하고 당년도의 재정수지를 균형시키는 수준 밖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며, 과거 누적채무의 상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연금 누적채무가 정부재정을 압박하고 근로세대에 부담능력을 한계에 이르게 하여 근로동기까지 감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선진국의 선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채무누적이 더 진행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연금제도 개혁시점에 누적채무의 탕감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연금제도는 적립방식적 성격과 부과방식적 성격이 혼합된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 누적된 채무에서 보호되어야 할 부분은 적립방식적 성격이고, 부과방식적 성격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현 세

대 현 가입자가 누려왔던 부분은 보편적 연금 차원에서 전국민이 함께 향유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합하여져 있던 적립방식적 요소와 부과방식적 요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즉, 부과방식적 요소는 기초연금으로, 적립방식적 요소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층연금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연금급여산식을 보면,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과 가입자의 전가입기간 평균소득(B)에 의하여 급여수준이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기에서 A와 B의 요소가 동시에 하나의 산식에 존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세대내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A는 정액급여로서 부과방식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고, B는 소득비례급여로서 적립방식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의 급여산식에서 A와 B를 분리하여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부과방식적 기초연금(1층연금)과 적립방식적 소득비례연금(2층연금)으로 이원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보험료율 납입액은 소득비례부문에서 승계하고,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적 방법을 통하여 매년도의 급여충당을 위한 보험료 징수를 통하여 재정을 조달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이라는 2층 연금체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과거 9년 동안의 채무액은 부과방식적 요소에 의하여 해결하고, 기존의 적립기금은 적립

방식적 성격의 소득비례연금을 기금화하여 소득비례연금내의 수급부담구조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수지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가방식적 성격의 급여 A를 현행 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10% 내외의 보험료 징수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이때 현행 보험료율 9%와 추가적인 10%를 합하면 19%에 이르러 미래의 보험료율 부담이 너무 가중됨으로 A부분의 급여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위한 급여수준이 현행의 급여수준보다 낮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후생계비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의 퇴직금제도를 연금화하는 방안,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 및 3개 공적직역연금제도를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초연금과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며,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의 퇴직금제도를 개편하여 기업연금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국민연금 구조개선 방안

가. 2층연금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균등부문

현행 국민연금 및 3개 공적직역연금제도를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초연금과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여야 한다.

과 소득비례부문을 분리하여 균등부문을 기초연금화한다. 기초연금에는 18세 이상 전국민이 가입토록 하고(1인1연금체제) 소득비례연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토록 한다.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피용자는 강제적용하고 자영자는 임의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소득비례연금은 완전적립방식에 가깝도록 운영한다. 기초연금 급여를 위하여 현행 연금보험료와 별도로 기초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며, 현행의 연금보험료는 소득비례연금의 보험료로 한다. 따라서 현행의 국민연금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을 위한 지불준비금적 성격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의 국민연금기금은 소득비례연금을 위한 기금으로 한다.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가입자에게도 현행 보험료와 별도로 기초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들에 대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재정에서 지급하고 각 직역연금급여에서는 기초연금 지급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나.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는 전국민의 노후최저생계

비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1인1연금체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8세 이상의 전업주부, 협업여성은 물론 의무병역에 있는 군인, 재학중인 학생, 실업자등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현재의 급여산식을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분리할 경우 기초연금 급여수준은 균등부분의 급여율을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가입자 평균소득자의 경우 40% 수준이다. 소득단위별 가입기준에서 1인1연금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소득단위별 40% 수준에서 1인당 20%씩 부부합산 40% 수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1인당 20%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비율이 현행보다 3~4배로 높아지는 2040년경에는 1인당 12%내외의 보험료부담이 예상되어 기초연금보험료만 부부합산하면 24%정도가 될 것이므로, 타 사회보험부담과 조세부담을 감안하면 부담능력이 한계를 초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초연금에는 연금제도 도입시 이미 노령이 되어 연금수급권이 없는 계층을 위한 무각출 노령연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이 세대간 상호원칙을 가진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현 노령계층도 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때 기존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가입자와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급여산식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무각출노령연금에 대한 소요액에 대하여 일반정부재정에서 얼마나 분담할 것이냐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노령세대를 위하여 부담하고 있는 65세 이상 일반노인에 대한 교통비와 저소득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 등을 이 제도와 통합하면서 이들 재원은 최소한 전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선진외국에서는 기초연금 재원의 일부를 정부의 일반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다. 일반재정에 의한 지원은 조세 혹은 공채발행에 의한 것이고 기초연금보험료는 사회보험료에 기초한 것이다. 1인1연금의 전국민이 가입하는 기초연금의 보험료는 사실상 소득세에 가깝다. 이렇게 볼 때 정부지원 비율의 문제는 필요한 재원을 조세방식에 의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보험료방식에 의할 것이냐의 정책적 선택의 문제이다.

한편 기초연금급여는 현행 국민연금산식의 균등부분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이므로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정액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만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은 두는 것이 연금제도가 가질 수 있는 근로유인 저하효과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최소 가입기간요건은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이 5년이므로 현행의 틀과 일관성

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5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연금수급연령은 초기에는 현재와 같이 60세로 하되, 평균수명의 연장추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수급연령을 65세까지 조정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연금제도 개정시 인구증가율의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조정계획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 보험료를 소득비례로 할 것인지 소득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보면 소득비례방식이 바람직 할 것이나, 자영자의 소득과액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소득비례방법의 도입은 소득재분배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요인을 절충하는 방안으로 기초연금 보험료는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도입초기에는 정률과 정액을 동일 비율로 적용하되, 소득과액률이 높아지는 추이를 감안하여 점차 정률보험료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노사가 1/2씩 부담하고, 자영자의 보험료는 가입자가 전액 납부하며,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그 보험료를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납부하도록 한다. 이때 배우자의 보험료 기준소득은 소득있는 배우자 소득의 1/2로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는 결혼후의 부부소득에 대한 기여를 평가할 때 각각 1/2로 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렵다고 인정

기초연금 보험료는 도입초기에는 정률과 정액을 동일 비율로 적용하되, 소득과액률이 높아지는 추이를 감안하여 점차 정률보험료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된 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되 가입기간 산정시 해당기간의 1/3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연금보험료 면제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을 일괄적으로 1/3을 인정하지 않고 연금수급시점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가입기간을 인정·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여하한 경우에도 노령시 최소한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기초연금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방법은 연금급여 소요예상액을 가입자의 총수와 소득을 감안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연도간의 급격한 변동요인을 분산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과거 4년, 미래 4년간의 급여지출액을 합계하여 평균한 액을 기준으로 평균기초보험료를 산정하는 9년 균형 부과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으로 남북한 통일시에 북한주민들에게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주민들도 기초연금에 가입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연금은 현행 급여체계의 소득비례부분을 기준으로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입대상은 기본적으로 별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단위로 가입하는 것으로 하되 자영자의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물론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도 가입을 원할 경우 임의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급여는 현행과 같이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반환일시금제도는 급여지급 범위를 이민 등 특별한 사유로 한정하여 제한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비례 노령연금 급여수준은 현행 급여산식의 소득비례부분의 급여율인 전가입기간 평균소득의 30%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장해연금 급여수준은 노령연금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며, 유족연금 급여수준도 현 체계와 같이 노령연금 급여수준의 40~60%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의 국민연금기금은 소득비례연금의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기 적립금은 기존 가입자가 불입한 자산이고 기초연금의 경우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별도의 적립금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은 현재의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부과계획을 기초로 하되 연금수리적 판단에 따라 다소의 가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제도도 가능한 연금재정균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비례연금의 기금운영방식도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비례연금은 연금수리적으로 완전적립방식에 가깝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것은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기금의 규모상으로 공공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익성과 공공성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연금제도 개혁은 가입자 및 수급자 등 기득권의 회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 동안 문제시 되어 왔던 기금운용상의 투명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

4. 맺음말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세대간 상호연대와 재정수지 균형을 통한 세대간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가능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현행 「고급여 저부담」의 국민연금체계의 불균형에 따른 유산을 후세대에 전가하지 않는 길이다.

이러한 국민연금개혁은 현재의 연금수급자라든지, 가입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며, 가능한 개혁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혁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가피한 급여율의 하향조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화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연금제도의 개편이라는 것은 다른 사회제도, 예컨대 고령자 노동, 퇴직연령 등의 노동시장적 요소의 변화와 아동수당 도입,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가능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현행 「고급여 저부담」의 국민연금체계의 불균형에 따른 유산을 후세대에 전가하지 않는 길이다.

고하기 위한 보육시설 확충 등 각종 사회제도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되는 도서는
간행물관리실(353-1570)이나
아래 서점을 통하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여의도경제서적: 02) 761~1708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02) 734~6818
- 국제무역자료센터: 02) 778~7003
- 교보문고: 02) 397~3628
- 영풍문고: 02) 399~5623
- 서울문고: 02) 553~3038
- 일신문고: 062) 228~2727
- 대동서림: 0343) 47~7000
- 종로서적: 02) 733~2331
- 을지서적: 02) 757~8991
- 영광도서: 051) 816~9500
- 학연사: 053) 353~8570
- 대동서적: 0345) 408~7114